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88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년 9월 3일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실태조사와 관련한 부분을 삭제함.

2. 주요내용

- 마약류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삭제함(안 제4조제3호)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3.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
관한 사업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신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시장은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마약류 <u>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관한 사업</u></p> <p>4.·5. (생략)</p>	<p>제4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등-----</u> -----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<u>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업</u></p> <p>4.·5.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3.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신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시장은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관한 사업</u></p> <p>4. 5. (생략)</p>	<p>제4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업</u>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